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가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가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강 소 영**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자료의 수집 .....	3
2. 분석방법 .....	6
3. 심층면접 수행 절차 .....	8
<b>제2장 이론적 배경</b> .....	<b>10</b>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 .....	10
제2절 학교폭력의 가해행동과 가정적 요인 .....	13
1. 가정의 구조적 요인 .....	13
2. 가정의 기능적 요인 .....	18
<b>제3장 학교폭력의 실태 및 가정적 요인분석</b> .....	<b>23</b>
제1절 학교폭력 실태 .....	23
1. 학교폭력의 경험 빈도 .....	23
2. 학교폭력의 유형별 양상 .....	28
제2절 학교의 가정적 요인 분석 .....	33
1. 가정의 구조적 요인 .....	36
2. 가정의 기능적 요인 .....	40

<b>제4장 가정적 요인 해소를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b> .....	<b>56</b>
제1절. 고위험군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 .....	57
1. 저학년 대상 관리감독의 강화 .....	57
2. 저학년 교과과정 연계 및 맞춤형 교육의 전환 .....	58
제2절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학부모 참여 .....	60
1. ‘직장 내 학교폭력예방교육’ 도입 검토 .....	60
2. 가해학생 특별교육에 학부모 참여 의무화 .....	62
제3절 경찰의 사후관리 및 처리절차의 공정성 강화 .....	65
1. 경찰의 사후관리 연계 강화 .....	65
2. 피-가해자 불분명한 사안에 대한 공정성 강화 .....	66
<b>제5장 결론</b> .....	<b>69</b>
<b>참고문헌</b> .....	<b>76</b>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한 치안관련 국정과제 1순위는 폭력의 근절이다. 이 중 학교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비행의 핵심 문제로 인지되어 왔으며, 최근에 와서 그 행태의 심각성과 피해학생의 자살 등 극단적인 사례들을 통해 전 국민적으로 범죄화(Criminalization) 인식이 확산되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청소년비행을 다루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개인적 요인을 비롯하여 가정, 학교, 사회환경적 요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최근까지도 학교폭력의 원인에 있어 가정의 구조적·기능적 요인은 비행문제의 근본원인으로 다루고 있으며, 가정 내 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개입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한 해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2013년 5월까지 서울 지역의 117 신고 건수는 모두 7,364건으로 전년(2,197건) 대비 235% 증가한 반면, 형사 입건된 학교폭력 사범 수는 973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 입건 유형 중 단순 폭력이 전년 동기 대비 46.3% 줄어든 반면, 사이버 모욕 등 무형의 폭력은 6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즉, 학교폭력은 이미 상당수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소년범죄자가 아닌 일반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미하고 사소한 폭

---

1) 뉴시스, “학교폭력 근절대책 100일 …신고 늘고 형사 처벌 줄어”, 2013년 6월 7일자.

력이 만연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폭력의 정도는 과거에 비해 고의성을 전제로 한 장난과 시비, 비표출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들은 ‘(빵·와이프이)셔틀’, ‘졸업빵’, ‘성적 강요행위’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괴롭힘을 전제로 하는 폭력양상들이 실태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면면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 양적 실태조사에 의존해 왔던 현상들에서 더 나아가 공식통계 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현상학적 탐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까지 연구대상으로 접근했던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의 상당수는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 초래하는 사례들에 대한 접근이 많았다. 예를 들어, 편부모가정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비롯되는 폭력 또는 무관심 등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학교폭력 가해자는 위와 반대로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계층, 부모의 보호능력이 충분한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에게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 또는 권력관계와 관련이 있는데, 피해자로 타겟(target)이 되더라도 부모의 보호능력 또는 경제적 지지에 따라 폭력이 억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화 또는 가해자화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의 기능은 학교폭력의 가해자-피해자를 야기할 수도 혹은 억제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양상에 대하여 과거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요인들을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 간 양적연구들에서 탐색하기 어려웠던 가정적 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가정 내 정책들에 접근하는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자료의 수집

학교폭력의 가해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들은 상당수 양적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요인을 개별적 변수의 검증으로 이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심도 있게 표출되지 않았던 현상, 즉 가정적 요인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탐색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경험과 인식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당사자들, 즉 청소년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나 이들은 학교폭력 경험에서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통해 가해-피해의 객관성을 결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피해자와 접촉을 하고, 처리과정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술이 가능한 전담경찰관 및 가정적 요인에 대하여 경험적 진술들을 도출할 수 있는 학부모들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각 대상자들은 연구자와 비정기적 일정과 장소에서 최소 1회 이상 그룹 및 면대면(face-to-face interviews)방식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담과정에서 녹취된 자료는 필사를 통해 정리하였고, 사례로 도출된 기록물, 현장 일지 등에 대한 전사작업(transcript)이 연구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면접조사는 서울 및 경인지역의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학교전담경찰관 20명과 학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조사대상자들 중 경찰관의 경우 최소 8개월 이상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외근 형태의 근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전담학교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사건 처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경험적 진술을 도출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일반적 사항은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학교전담경찰관

연번	지역	계급	성별	(청소년계) 근무기간	담당업무
1	서울	경감	여	3년 이상	117센터 신고 상담 및 수사
2		경사	남	2년 이상	
3		경장	여	1년	
4		경사	남	4년 이상	초중고 5개교
5		경장	여	2년 이상	초중고 5개교
6		경장	남	2년 이상	초중고 5개교 (학폭 수사담당 겸)
7	경기	순경	남	9개월	초교 21개교 전담
8		경사	여	8개월	고교 24개교 전담
9		경정	여	6개월	청소년계 담당
10		경장	남	8개월	범죄예방교육
11		순경	여	4년 이상	범죄예방교육
12		경장	남	7개월	학교폭력 관련 기획·관리
13		경장	남	24개월	초중고 20개교
14		경장	여	15개월	생활지원 지도 특별학교 7개교
15		순경	여	6개월	초중고 18개교
16		경사	남	5개월	초중고 15개
17	인천	경장	남	2년 이상	초중고교 31개교 전담
18		경사	남	8개월	초중고교 31개교 전담
19		순경	여	4개월	초중고교 예방교육
20		경사	여	1년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

그리고 학부모의 경우 서울 및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있거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사건을 목격·처리과정 개입의 유경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만, 사건 당사자의 학부모에게는 주관적인 진술을 충분히 배제하는 질문들을 유도하였고, 기타 유사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학부모의 일반적 사항은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학부모

연번	지역	부모(父母)	학교폭력 관련 자녀	학교폭력 관련 여부
1	서울	모	중3(남)	가해-피해 경험
2		모	중1(남)	자치위원회 위원
3		모	중3(여)	자치위원회 위원
4		모	중1(남)	피해 경험
5		모	중3(여)	가해-피해 경험
6		모	중1(남)	가해 경험
7		부		
8	인천	모	고1(여)	가해-피해 경험
9		모	고1(남)	자치위원회 위원
10		모	고2(여)	자치위원회 위원
11		모	고2(여)	자치위원회 위원
12	경기	부	중3(여)	가해 경험
13		모		
14		부	중3(여)	피해 경험
15		모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현상에 대한 면담을 위해서는 전담경찰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과정에서 117센터 및 한국피해자지원협회(COVA)에 접수된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 판단을 근거로 진술을 유도하

였다. 수집된 사례들의 기록물들에서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최대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제외하고 연구의 목적이 의도하는 항목만을 선별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년, 가족관계, 상담 및 폭력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참고사항들에 대하여 기록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 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양상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학교폭력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녀차이와 학년별 차이를 분석하였고, 가정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학부모 대상의 면접자료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우선, 질적 연구에 활용되는 면접자료에 대한 기초자료로 일반적인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경찰청 학교폭력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이미 발표된 변수들을 제외하고, 학년별, 성별 학교폭력 피해 빈도 및 유형별 피해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의 주제가 가해학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태분석은 학교폭력의 양상 및 주요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한 분석결과들은 제3장 제1절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중점적인 자료의 접근 및 분석을 위해서는 현상학적 접근(A Phenomenological Study)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조사대상자로부터 경험의 의미를 기술하게 하고, 내용의 분류를 통해 의

미를 단위로 묶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이 진술의 묶음들에 대하여 ‘무엇이 일어났는지(조직적 기술)’, ‘어떻게 현상이 경험되는지(구조적 기술)’, ‘본질, 즉 경험의 전반적인 기술’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의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주제가 되는 현상을 경험한 개인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통상 5~25명 정도의 정보제공자와 장기간 면접을 통해 수행된다. 이 경우 표본추출은 모든 조사 대상자들이 연구될 현상을 경험해야 하므로 의도적이고 제한적으로 선정된다.<sup>2)</sup>

자료의 분석은 학교전담경찰관과 학부모 대상으로 수행된 심층면접 응답자료를 현상학적 접근(A Phenomenological Study)에 따라 수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Steviek-Colaizzi-Keen 방법의 수정판으로 알려진 접근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그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상에 대한 경험을 전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둘째, 면접을 통해 어떻게 주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찾고, 의미 있는 진술들을 나열하며(자료의 수평화, horizontalization), 각각의 진술에 동등한 가치를 두어 다루고, 반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진술들을 목록화 한다. 셋째, 이 진술들은 의미 단위(meaning units)로 분류하고, 이 단위들을 재 나열하며, 축어적 예를 포함하여 일어난 경험의 조직(조직적 기술, textural description)을 기술한다. 넷째, 이 기술들에 대하여 상상적 변형 또는 구조적 기술을 사용한다. 이는 있는 모든 의미와 다양한 관점들을 찾고, 현상에 대한 준거들을 다양화하며 현상이 어떻게 경험되는 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험의 의미와 본질(essence)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구성한다.<sup>3)</sup>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적 요인의 분석을 3장의 2절에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2)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흥식 외 공역, 질적 연구 방법론*, 학지사, 2006, 76-98면.

3) John W. Creswell, *조흥식 외 공역, 위의 책*, 184-185면.

### 3. 심층면접 수행 절차

이 연구의 주된 연구과정인 심층면접을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에 앞서 조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의 취지를 설명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에 근거한 응답을 자유롭게 기술 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다.

면접시간은 평균 약 1~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은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에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을 정도로 포화되는 시점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면담과정에서는 적절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sup>4)</sup>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1)최근 학교폭력 양상(일진문화의 변화, 동조자 또는 방관자에 대한 양상, 최근 괴롭힘 행위의 변화 등), 2)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주된 동기, 3)가해학생의 가정환경과 폭력성과의 관계, 4)기타 부모 및 교원 등의 관계, 협조,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 질문을 통해 진척된 응답을 유도함으로써 사례분석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와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Padgett(1998)이 제안한 자료원의 다원화를 위해 면접자료 외에 현장일지와 사건기록 및 관련 업무 자료에서 도출된 사례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연구자의 삼각화를 위해서는 공동연구자 외에도 2인 이상의 관련 전

4) 반구조화된 면접방식은 규정적인 질문에 규정된 응답을 확인 후 그 응답에 대한 더 진척된 정보를 추구하는 보다 개방폐쇄적 질문들(open-ended questions)을 사용한다; Nicholas Walliman, Your Research Project: Designing and Planning Your Work, 손장권 역, 리서치 프로젝트, 도서출판 그린, 2013, 208면.

문가들과 논의를 통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sup>5)</sup> 또한 연구자 간에는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한 공통된 개념화를 도출해가는 반복적인 논의를 이루었다.

---

5) 삼각검증(triangulation)은 동일한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통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Denzin, N, K., The logic of naturalistic inquiry, Sociological methods: A sourcebook. New York: Mcgraw-Hill, 1978 참고.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

사전적 의미의 학교폭력(學校暴力)은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신체·언어·정서적이며, 통상 특정 기간 동안 되풀이하는 형태를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학원폭력(學院暴力)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sup>6)</sup>

학교폭력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에 들어서이다. 당시 일본에서 '이지메(いじめ)'로 불리는 집단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당시 괴롭힘으로 인해 초·중학교 학생들이 전학하는 사태가 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sup>7)</sup>

이후 90년대 중반, 집단괴롭힘을 당한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03년에 일본어 '이지메(いじめ)'의 개념이 '괴롭힘' 또는 '집단괴롭힘'으로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에 수록되었다. 90년대의 학교폭력은 소수의 폭력씨들의 일진들에게서 발생하는 일들로 여겨지다가<sup>8)</sup> 최근에 와서 집단괴롭힘, 셔틀<sup>9)</sup>

6)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7) 경향신문, “폭력교실 도피전학 잇따라”, 1986년 5월 23일자.

8) 일진회(一陣會) 혹은 일진(一陣)은 일본에서 유래한 폭력 단체로 흔히 대부분의 학교 내에 존재하는 폭력 조직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폭력의 우열로 수순을 정해 놓고 일진(一陣), 이진(二陣)으로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 처음 등장하였고, 한국에서는

등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한 피해자들이 연이어 자살하면서 심각한 범죄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sup>10)</sup>

이러한 배경으로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고, 개정된 「학교폭력방지법」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의견일치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범위에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준호(1997)는 폭력의 발생장소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학교 내 또는 학교주변과 등·하교 길에 발생하는 폭력, 폭력의 주체에 따라서는 ‘학생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일상적 생활과정에서 동급생, 선·후배, 기타 지인 등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유·무형의 폭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폭력의 유형에 따라 이순래(2000)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무역, 언어적 공격, 상징적·심리적 강제 및 집단적 따돌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와 같이 정의하기도 한다.<sup>11)</sup>

1970년대부터 비슷한 학교 폭력조직 문화가 있다가 1994년경부터 일진이라는 단어가 정착했다: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9) 셔틀(Shuttle)은 학교 폭력의 일종으로, 가해 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심부름을 하는 학생들을 총칭하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조어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가상의 종족인 프로토스의 병력 수송선인 "왕복선"의 영어 표기(Shuttle)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EB%B9%B5%EC%85%94%ED%8B%80>).

10) 뉴시스, “영주 '중학생 자살사건' 학교폭력 실체 드러나”, 2012. 04. 18; 한겨레, “2년째.. 나 맞고 산다...대구서 학생 10번째 투신”, 2012. 06. 04; 동아일보, “전주 자살 고교생 유족 “1년 동안 학교폭력 당해...담임 알고도 쉬쉬”, 2012. 01. 13; 한겨레, “자살한 날도 동급생 일진이 샌드백 치듯 때려..광주 중학생도 학교폭력 희생”, 2011. 12. 30.

11) 강소영, “학교폭력에 대한 근거이론의 접근: 폭력적 교실문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 제2호, 2012a, 6-7면 재인용.

다소 포괄적이긴 하지만 노르웨이의 Olweus(1993)는 위협, 조롱, 때림, 발로 찌기, 들볶음 꼬집기, 따돌림 등 물리적이거나 비물리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한국의 청소년개발원(1998)은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심리적·물리적 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sup>12)</sup>

보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다수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물리적 폭력 포함시키고 있는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에서의 폭행과 같이 모든 종류의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 외에도 물리적 폭력 이외에 언어적, 정서적, 사이버 폭력 등의 유형들이 포함되며, 청소년이 학교생활 내·외에서 행사하는 모든 강요행위,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모욕<sup>13)</sup> 등에 이르기까지 유·무형의 폭력이 광범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추세와 현행 「학교폭력방지법」에서 정의한 대상과 장소의 범위를 반영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유·무형의 폭력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12) 김혜원, 청소년 학교폭력: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 학지사, 2013, 25면.

13) 경향신문, “학교 폭력, 경산 투신 학생 성추행도 당했다”, 2013년 3월 14일자: 경북 경산에서 투신해 숨진 7군(15)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절 학교폭력의 가해행동과 가정적 요인

### 1. 가정의 구조적 요인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구조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거시적 측면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미시적 측면에서는 가족의 결손과 같은 특징이 비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sup>14)</sup>

사회경제적 지위는 빈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금전적 부족에 따른 절대적 빈곤과 희망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써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적 빈곤가정이 포함된다. 그리고 가족의 결손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으나 계부·계모 가정이 포함되며, 부부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경우 준결손가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15)</sup>

여기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아래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경제적 수준은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수준 등은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비행에 미치는 주요한 변수들이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 가. 가족의 형태

14) 김준호 외,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9, 145면.

15) 김혜원, 앞의 책, 190면.

청소년비행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가족의 결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편부모 가정에서는 생계에 치중하게 되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착의 정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sup>16)</sup>

이와 관련하여 이창한(2010)은 청소년패널자료(KYPS)의 5개년 종단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 중 결손가정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3%가 비행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손으로 인해 청소년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sup>17)</sup>

더욱이 한부모 가정 또는 가구의 총소득이 최하위계층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sup>18)</sup> 이혼과 같은 가정의 결손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감소를 초래하고 결국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sup>19)</sup>

물론 가족의 결손은 결손의 기간, 형태,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이혼이나 별거 또는 사망이냐에 따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sup>20)</sup> Lynn(1974)는 부모의 사망보다 별거나 이혼 또는 가출과 같은 결손 형태에서 청소년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 미혼의 부모나 수형, 유기, 별거 등으로 인한 결손형태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강력범죄와 더 큰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sup>21)</sup> 또한, 이러한 요인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범죄경력에도 상당부

16) 김준호 외, 앞의 책, 152면.

17) 이창한, “결손가정의 기능적 특성과 적응유연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2권 1호, 2010, 191면.

18) Anne Daly et al., “Indicators of risk of social exclusion for children in Australian households: an analysis by state and age group”, Australasi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Vol.14 No.2, 2008, pp. 133-157.

19) Fine, M. A., J. R. Moreland, and A. I. Schwlebel, "Long-term effects of divorce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1983, pp. 703-713.

20) 이창한, 앞의 논문, 179-180면.

21) 이윤호, 범죄학, 박영사, 2007, 53-56면.

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여성의 폭력범죄를 추적 조사한 전영실(2004)의 연구에서도 여성폭력범죄자는 남성에 비해 이혼, 별거 등 가정이 구조적으로 원만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sup>22)</sup> 이처럼 가족의 결손은 개인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손의 원인과 형태 그리고 기간 등이 다른 구조적 기능, 즉 부모의 생업과 관련한 부모의 부재, 나아가 경제적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의 결손은 아니지만 결손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는 가정적 특징이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즉, 결손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부모가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녀들을 돌보거나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청소년비행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sup>23)</sup> 또한, 학교관련 요인에서 부모의 이혼경험 여부가 유의미한 요인변수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강조하기도 한다.<sup>24)</sup>

뿐만 아니라, Farrington(1995)은 1953년 411명의 소년들을 추적조사한 캠브리지 연구(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에서 지속적인 범죄자들의 경우 낮은 가족 수입, 결손가정과 같은 다양한 요인 외에도 반사회적인 아버지, 부적절한 부모 양육과 같은 문제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sup>25)</sup> 이러한 구조는 가족의 결손 또는 부모의 부재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구조 자체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가정의 구조적 요인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 및 양육기회의

22) 전영실, “여성 폭력범죄의 특성 및 대책”, 교정연구, 제22호, 2004, 141-168면.

23) 김준호 외, 앞의 책, 153면.

24) 이중섭·이용교, 앞의 논문, 21면.

25) Farrington, David P., "The Twelfth Jack Tizard Memorial Lecture: The Development of Offending and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Key Finding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360, 1995, p. 929.

감소를 가져와 기능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의 구조와 기능을 뚜렷하게 분리해서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양적연구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검증되어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 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청소년비행이론의 출발은 빈곤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Cohen(1955)이 주장하는 하위문화이론은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은 중산층의 가치와 대조적인 비행 하위문화를 형성하며 그 문화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Show & Mckay(1942)의 고전적 사회해체이론이 주장하는 하층 밀집지역의 사회해체로 인한 비행의 영향, Hirshi(1960)의 사회유통제이론이 청소년들의 가정이나 부모의 직업, 학교에 대한 적응이 하위계층에서 더 약화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sup>26)</sup>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부모의 직업, 소득수준과 이어지고,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해체 등의 요인들로 인해 청소년의 비행 억제를 약화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 빈곤은 일반적 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비행이나 범죄, 학업중단,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sup>27)</sup> 저소득과 열악한 주거환경은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학교이탈, 약물남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6) 김준호, 앞의 책, 147면.

27) 이중섭·이용교, 앞의 논문, 3면.

있다.<sup>28)</sup>

이 외에도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비행의 경험 또는 학교부적응을 초래한다는 결과들이 상당부분 검증되었다.<sup>29)</sup> 예를 들어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아버지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수록 청소년은 낮은 적응능력, 부정적인 생활사건에의 노출, 낮은 학업능력 그리고 학교부적응과 정서상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이처럼 사회계층적 요인은 종종 개인의 일상활동 및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요인들이 범죄피해의 기회적 요인 및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광도(2011)는 10대 초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범죄피해에 미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보호정도가 높고, 직업 및 경제적 수준은 보호정도와 정(+)의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sup>31)</sup>

28) Brown, "The impact of social exclusion on rural children and young people", A paper to the rural affairs forum for England, 2002.

29) 사회적 배제란, 빈곤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삶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류사회의 격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중섭·이용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 16권 제7호, 2009, 1-27면.

30) 송신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참조.

31) 기광도, "사회계층과 범죄피해간의 관계분석: 저연령아동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 18권 제2호, 2010: 357-374면.

## 2. 가정의 기능적 요인

### 가. 부모의 긍정적 보호요인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정의 기능적 요인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 훈육방식 및 감독 등으로 설명된다. Hirshi(1969)는 사회유대이론을 통해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적절하고,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있는 경우 비행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sup>32)</sup> 이미 다수의 연구들에서 부모의 애착은 비행의 중요한 통제요인으로 밝혀져 왔다.<sup>33)</sup>

이들 요인은 주로 부모의 보호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정적 요인에서는 안정된 집안 분위기, 부모의 정서적 지지, 학습참여, 적절한 감독 등을 하위 요소로 둔다.<sup>34)</sup> 이러한 보호요인은 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자기통제력과 올바른 인격성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등에서 비행에 노출되더라도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해 왔다. 물론 이러한 경우 청소년들은

32) 김준호 외, 앞의 책, 147면.

33) 박은하·권세원, “가정폭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3호: 2008, 201-231면; 노성호, “청소년의 비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검증”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5; 김준경,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교정시설 보호청소년의 위험행위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3호, 2008, 241-255면; 이주리, “중고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과 비행”,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7권 제4호, 2008, 563-574면.

34) 보호요인들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이다: Garmezy, N.,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1991, p. 417.

부모의 애착과 통제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과도 이어진다.<sup>35)</sup> 따라서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부모의 역할, 즉 부모의 보호요인은 청소년비행의 억제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요인의 영향관계를 보면 학교폭력의 무경험 집단은 피해 또는 가해 집단에 비해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sup>36)</sup> 정서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긍정적이고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에도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다.<sup>37)</sup> 즉, 가족의 지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이러한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유도할 수 있다<sup>38)</sup> 즉 부모요인 중 정서적 지지와 같은 요인은 학교폭력의 가해를 조기에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부모의 부정적 보호요인

부모의 보호요인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연구들과 사례에서 과잉보호와 같은 보호는 오히려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서적 지지가 낮은 가해자의 가정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부모의 보호요인이 부정적이거나 감소하는

35) Haight, W. L., Kagle, J. D., & Black, J. E.,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Foster Care Visits: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Social Work*, 48(2), 2003, pp. 195-207.

36) 김혜원·이해경,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제1호, 2000, 45-64면.

37) 이하늘·이숙,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경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50권 2호, 2012.

38) 정규석,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 1호, 2004, 235-252면.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선 Amaranta et al.(2012)의 종단연구에서는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성형성이 여러 세대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는데,<sup>39)</sup>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등 비행의 요인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가해 원인은 공격적, 적대적, 자기주장이 강하거나 일반규칙을 무시하는 성격에서 잘 나타나며,<sup>40)</sup> Zimmerman et al.(2005)는 종단연구를 통해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부족 등 부정적 기능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또는 부모와의 유대가 약하거나 불안정한 양육형태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sup>41)</sup> 즉, 부모와의 낮은 애착관계, 정서적 지지 그리고 양육태도를 통해 부모의 가정교육이 자녀의 비행성향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의 관여에 대한 연구들, 주로 자녀에 대한 관심정도, 학업에 참여하는 정도 그리고 부모의 방임과 감독의 소홀은 청소년의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우울, 분노성향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며,<sup>42)</sup> 가정폭력 경험 중에서도 정서적 폭력과 방임은 학교폭력과 같은 비행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sup>43)</sup> 결국 방임과 무관심 등 자녀에 대한 관여가 낮을수록 자

39) 한인영·홍준성·문현주, “조부모·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폭력가해경험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1호, 2013, 182면; Cliff McKinney et al., “Perceived parenting,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 of parents and late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vol. 13 No. 2, 2008, 66-73면; Amaranta et al., “Longitudinal impact of parental and adolescent personality on paren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2, No. 1, 2013, pp. 189-199.

40) Beaty, L. A. & Alexeyev, E. B., “The Problem of school bullies: What the research tells us”, Adolescence, 43(169), 2008, pp. 1-11.

41) 심희옥,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에 관한 횡단 및 단기종단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세미나자료집, 2008.

42) Bolger, K. E. & Petterson, C. J.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72(2), 2001, 540면.

녀관계에서 애착이 낮아지게 되고, 낮은 애착은 또다시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이어져 비행성향을 가중시킨다.<sup>44)</sup>

방임과 같은 요인은 주로 자녀가 잘못을 하더라도 체제 받지 않음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사소한 폭력이 성인이 되어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더욱이 가정의 방임이 폭력가정 또는 아동 및 청소년기 학대와 함께 이루어질 때에는 학교폭력과 같은 비행을 넘어 소년범이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방임과 반대로 과잉보호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도 들을 수 있다. 앞서 부모의 보호요인이 긍정적일수록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나, 일반적이지 않은 보호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더 극단적일 수 있다. 윤명숙·송행숙(2011)의 연구는 과잉보호와 같은 변수는 외톨이 집단의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과잉보호의 수준이 높고, 집단괴롭힘의 피해경험에 더 많다고 밝혔다.<sup>45)</sup> 이 외에도 김춘경(2000)<sup>46)</sup>은 과잉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자기중심적, 이기적, 의존적 성격이 특히 공동체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의 원인이 또래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에 초점을 맞출 때, 몇몇의 피해자들은 갈등을 유발하는 책임 있는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보호요인은 정서적 지지와 부모의 관여정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에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억제적 요인이 될 수 있지

43) 강소영,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방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 제1호, 2012b, 5-30면.

44) 이희길, “자녀양육을 매개로 한 범죄성의 세대 간 전이”, 사회이론, 제33호, 2007, 165-202면.

45) 윤명숙·송행숙, “부모 및 심리사회적특성과 집단괴롭힘 경험이 중학생 외톨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0호, 2011, 89-121면.

46) 김춘경,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인심리학적 분석”,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치료연구 4권 1호, 2000.

만, 반대로 낮은 정서적 지지와 부모의 방임과 같은 요인은 가해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정 내에서의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에 그치지 않고 더욱 심각한 범죄를 유발 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학교폭력이 일방적인 경우보다 또래집단 상호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유책한 요인들로 과잉보호가 갖는 부정적 영향도 크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 제3장 학교폭력의 실태 및 가정적 요인분석

### 제1절 학교폭력 실태

#### 1. 학교폭력의 경험 빈도

##### 가. 피해경험의 저연령화

경찰청 학교폭력실태조사(2012) 데이터를 사용해 학년별 피해경험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3>과 <그림 1>에서 전체 응답자 21,886명 중 '전혀없다'의 응답을 제외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최소 1회 이상 경험한 응답자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각각 11.2%(544명)와 11.2%(688명)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은 9.8%(518명), 고등학교 1학년은 3.9%(216명) 순으로 고등학생으로 진입한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가해학생은 지난해 2,390명을 기록해, 2010년 657명의 3.6배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학생은 14,179명에서 26,622명, 고등학생은 5,113명에서

9,453명으로 각각 1.8배로 늘었다.<sup>47)</sup>

<표 3> 학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실태

(단위: 건/ 비율)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빈도								전체
	전혀 없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무수히 많다	
초등학교	4,294	252	110	51	22	21	24	64	4,838
6학년	88.8%	5.2%	2.3%	1.1%	.5%	.4%	.5%	1.3%	100.0%
중학교	5,473	345	129	63	29	21	16	85	6,161
1학년	88.8%	5.6%	2.1%	1.0%	.5%	.3%	.3%	1.4%	100.0%
중학교	4,779	252	106	56	23	13	14	54	5,297
2학년	90.2%	4.8%	2.0%	1.1%	.4%	.2%	.3%	1.0%	100.0%
고등학교	5,374	112	32	20	7	4	3	38	5,590
1학년	96.1%	2.0%	.6%	.4%	.1%	.1%	.1%	.7%	100.0%
전체	19,920	961	377	190	81	59	57	241	21,886
	91.0%	4.4%	1.7%	.9%	.4%	.3%	.3%	1.1%	100.0%

※ 2012년 경찰청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재구성(결측치 제외).



<그림 1> 최소 1회 이상 피해경험 실태

47)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학생 3년간 두 배로...초등생 '급증'”, 2013년 8월 25일자.

과거에 비해 최초 폭력을 경험하는 시기가 점점 낮아져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sup>48)</sup>, 피해경험이 초·중학생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하는 시점에서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물론, 초등학교와 달리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가정보다는 학교나 또래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의 관리감독이 연장 될 수 있는 학교 내 관리감독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각기 다른 초등학교에서 진학한 또래들이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게 되며, 이 들 간에는 각 초등학교에서 지니고 있던 문화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기도 하다. 따라서 학기 초 일진세력 적발 및 또래집단의 충돌을 조기에 개입하기 위한 집중 단속 및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저연령 시기의 폭력행위는 성장과정에서 범죄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표적인 연구로 노르웨이의 심리학자 Olweus(1996)는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20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때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69%가 24세 이전에 전과 1범이 되었고, 35~40%는 24세 이전에 전과 3범이 되었다고 밝힌바 있다.<sup>49)</sup> 즉, 청소년 초기의 폭력성이 성인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폭력에 대한 억제에 있어서도 조기개입이 중요한데, 2013년 경찰청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19,049명)을 대상으로 선도프로그램 이수(3,238명, 17%) 후 재범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도프로그램 이수시 재범률은 미이수시 보다 4.9%p(4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8) 한인영 외, 앞의 논문, 184-185면 참조.

49) Olweus, D. The Revised Olweus Bully/Victim Questionnaire, Bergen, Norway: Mimeo, Research Center for Health Promotion (HEMIL), University of Bergen, 1996.

이 경우 초등학생의 재범률은 0%로 나타나 중학생 7.5%, 고등학생 3.7%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sup>50)</sup> 즉, 저학년일수록 비행행위에 대한 조기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을 조기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진학하면서 새로운 환경과 청소년으로써 한 층 성장했다고 여기는 지위를 스스로 형성하게 된다. 특히, 방과 후 학원 등 다수의 시간을 가정 외에서 보내는 중학생의 경우는 그만큼 관리감독자의 시야 밖에서 학교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는 학급에 담임교사가 상주하지 않고, 가정 내의 관리감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당수 학교들이 교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했으나 학교 10개교 중 1개교에 불과 할 만큼 수요에 비해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sup>51)</sup> 또한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이 인지되었을 때, 또는 자발적인 상담 요구가 있을 때 가-피해자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 나. 성별 피해경험의 차이

아래의 <표 4>에서 성별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1번~2번’과 ‘무수히 많다’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신학기 초 새로운 진급 및 학급형성에서 오는 서열형성, 세력 간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방학 기간 동안 학교 외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개학을 계기로 학교 내에서 접촉하

50) 경찰청, 내부자료, 2013.

51)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학생 3년간 두 배로...초등생 '급증'”, 2013년 8월 25일자.

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계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7번 이상 무수히 많다'로 응답한 경우에서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75%가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학생의 경험빈도가 높은 이유를 Agnew(1982)의 일반긴장이론에서 범죄율의 성차를 통해 추론해 볼 때, 남성은 긴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공격적 성향으로 비판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긴장을 완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자극이 폭력과 같은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극단적 긴장이 아닌 경우에는 폭력적 반응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경우 긴장, 좌절, 노여움을 경험하는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고 내면화하도록 사회화된다는 것이다.<sup>52)</sup>

즉,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남녀학생이 이러한 긴장을 받아들이거나 해소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범죄학이 아닌 다양한 연구들에서 남녀의 차이는 생물학·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남학생의 폭력에 대한 수용정도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 빈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남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조기에 사소한 다툼에도 개입해야 폭력의 지속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52) Lasa Broidy and Robert Agnew, "Gender and Crime: A general Strai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1997, pp. 275-306.

<표 4> 성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여부

(단위: 건/ 비율)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빈도								전체
	전혀 없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무수히 많다	
남학생	9,301	533	216	118	46	39	41	183	10,477
	42.5%	2.4%	1.0%	.5%	.2%	.2%	.2%	.8%	47.9%
여학생	10,619	428	161	72	35	20	16	58	11,409
	48.5%	2.0%	.7%	.3%	.2%	.1%	.1%	.3%	52.1%
전체	19,920	961	377	190	81	59	57	241	21,886
	91.0%	4.4%	1.7%	.9%	.4%	.3%	.3%	1.1%	100.0%

※ 2012년 경찰청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 재구성(결측치 제외).

## 2. 학교폭력의 유형별 양상

학교폭력의 개별 유형에 따른 피해경험을 성별에 따른 차이로 알아보기 위해서, 최소 1회 이상 폭력 경험이 있는 유형별 피해 경험을 아래 <표 6>과 <그림 2>에서 재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아래의 <그림 2>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 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남학생 10,621명 중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23.4%(2,487명)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물리적 폭력 13.6%(1,446건), 사이버폭력 8.0%(852명), 갈취 5.1%(540명), 강요행위(셔틀) 3.3%(346명), 집단따돌림(왕따) 2.1%(226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응답자 11,463명 중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언어폭력이 16.3%(1,865명)로 가장 높고, 다음은 사이버폭력 6.5%(741명), 갈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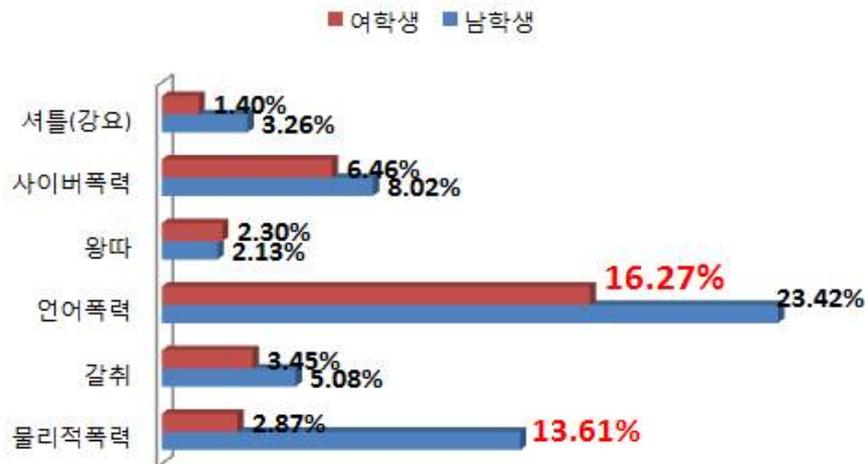
3.5%(396명), 물리적 폭력 2.9%(329명), 집단따돌림(왕따) 2.3%(264명), 강요행위(셔틀) 1.4%(16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최소 1회 이상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단위: 건/ 비율)

	물리적 폭력	갈취	언어 폭력	집단 괴롭힘	사이버 폭력	강요 행위
남학생	1,446 13.6%	540 5.1%	2,487 23.4%	226 2.1%	852 8.0%	346 3.3%
여학생	329 2.9%	396 3.5%	1,865 16.3%	264 2.3%	741 6.5%	161 1.4%

※ 2012년 경찰청 학교폭력실태조사, 최소 1회 이상 피해경험자 통계를 유형별 재구성.



<그림 2> 최소 1회 이상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학교폭력 유형 중 남녀학생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난 유형은 언어폭력이다. 실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유형인 강제적 심부름(80.2%)이나 금품갈취(77.2%)는 2012년에 비해 크

게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은 34%로 전년의 33.9% 보다 오히려 증가했다.<sup>53)</sup> 앞서 학교폭력의 범죄화 인식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하게 느껴지거나 비표출적인 형태의 언어폭력에 대한 범죄화 인식은 여전히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무시하거나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이 언어폭력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빈도가 높은 남학생의 물리적 폭력, 여학생의 사이버 폭력은 결국 사소한 언어폭력에서 시작되는 것을 추정할 수 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폭력은 주로 문자, 즉 험담, 욕설, 모욕 등 언어폭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언어폭력은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진 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은 인터넷 댓글, SNS나 모바일 메신저 등 사이버 상에서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고 이를 통한 교감이 남학생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여학생의 경우 부정적 교감에서 발생하는 소외, 무시, 수치심 등의 정서적 반응이 언어폭력에서 많이 들어나는 것인데, 물리적 폭력 보다는 감정적 요소들을 표출하는 장소가 사이버 공간 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의 정서적 폭력의 경우는 기존 연구들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시선폭력’의 유형들이 면접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선 폭력은 학문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주로 문학이나 영화 등에서 흑인이나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소외된 시선을 통해 폭력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에서 비만(주로 여성 등)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시선들을 통해 상용되어 왔다. 주로 사회 속에서 폭력의 시작이 시선에서부터 시작되고 폭력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53) 교육부,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3, 3면.

학교폭력의 경우에서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주로 학생들의 피해 사례에서 ‘따돌림 가해자들의 시선’, ‘무시하는 시선’, ‘힘담 및 명예훼손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시선’, ‘남들이(가해자, 조력자, 방관자 등)나(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진술분석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의미에 있다. 여학생의 경우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 무시, 힘담, 명예훼손 그리고 소외 등을 당하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감정적 상처를 받게 되는 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선폭력은 정서적 폭력에 해당되며, SNS 등을 자주 이용하는 여학생들에게서 시·공간적 제한이 없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폭력유형에 속한다.

실태조사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도출한 양상들을 부연하면, 과거 일진문화에서 비롯되는 폭력조직 형태의 물리적 폭력에 대한 수준은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물리적 폭력이 높게 나타났다. 주로 물리적 폭력이 남학생의 경우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에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 등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폭력에서 발견되는 물리적 폭력의 수준은 경미하거나 표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은 범죄화 인식 없이 장난처럼 행해지며 교실 내 폭력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괴롭힘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장난을 빙자하여 가해의식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

사례 1. ‘피해학생이 키가 작고 만만하게 보여서...’

사례 3. ‘장난을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물리적 폭력 행사’

사례 4. ‘다수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장난삼아 때림’

사례 11.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장난을 빙자하여 폭행’

.....

이처럼 폭력행위에 대한 심각성 또는 범죄화인식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2012년 7월에 교과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는 학생 76%, 학부모 76%, 교원 75%가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최근까지도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경찰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범죄화인식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면접조사를 통한 사례와 진술의 내용들에서는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과 별도로 학교폭력의 수준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소한 괴롭힘 또는 물리적 폭력의 경우에도 상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다. 사례에서와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사례 6, 눈 밑 피부살을 꼬집는 방법; 사례 나, 레슬링 기술을 빙자하여..) 가해하는 경우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적발되더라도 장난이라고 변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유명브랜드 의류 또는 통신데이터의 사용 등 갈취의 경우에도 단순히 빌려 썼다고 주장하는 형태가 주된 방법이다.

이와 같이 가해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통해 폭력의 심각성 및 강요·갈취 등에 대한 죄책감을 완화하게 하는 요인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자기정당화는 Sykes & Matza(1957)의 중화기술(techniques of

neutralization)로 설명할 수 있는데, 비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지만 인습사회에서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중화)함으로써 비행을 쉽게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중화기술은 통제의 약화 상태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sup>54)</sup> 이 연구에서는 통제약화의 기제들을 가정적 요인에서 추론해 보고자 한다.

## 제2절 학교의 가정적 요인 분석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가정적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앞서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수행방법은 주로 면접과정에서 도출된 주관적 기술들에 대한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표 7>의 사례들을 토대로 면접조사에서 추출된 진술들을 전사(transcript)하여 의미 있는 진술들을 이론적 근거에 따라 범주로 분류하였다. 범주의 근거는 범죄학이론에서 학교폭력의 주요 쟁점으로 간주하는 가정적 요인인 구조적, 기능적 요인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진술의 의미들을 단위로 묶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반복적 용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고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조작적 정의를 선행연구 등에서 선별하여 ‘가족의 형태’, ‘한부모 가정’으로 구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단위는 가정의 구조적 요인을 범주로 묶었을 때, 가족형태-한부모 가정 등은 하위범주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각 단위로 묶인 변수들에 해당되는 공통된 의미들을 주제

54) 김준호 외, 앞의 책, 107-108면.

화 하여 기술하는 것인데, 각 하위범주를 설명하는 문장은 공통된 의미의 내용들을 간결하고 함축되게 표현하였다(예, 양부모 가정은 ‘부모 모두 존재하는 형태’로 표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조적 요인은 가족형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명명할 수 있는 2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항목은 총 9개의 의미로 범주화 되었다. 그리고 기능적 요인은 정서적 지지, 부모의 관여, 과잉보호, 집안분위기로 명명한 4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으며, 그 항목은 총 13개의 의미로 범주화 되었다. 구체적인 범주와 항목 그리고 내용은 아래 <표 7>에서 제시하였다.

<표 6> 가정적 요인에 대한 분류체계

범주	하위범주	내용
가족 형태	양부모 가정	부모 모두 존재하는 형태
	조부모 가정	양부모 모두 없는 조부모 가정 형태
	한부모 가정	이혼, 사별 또는 별거로 인한 결손으로 부모 일방이 없는 형태
구조적 요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낮은 경제적 수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하류계층에 속한다고 판단
		낮은 교육 수준 양부모 또는 부모 일방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거나,
		낮은 직업 수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맞벌이 부부 양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의 가정 형태
		외벌이 부부 양부모 중 외벌이 이거나, 편부모가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거주지역의 낮은 경제적 수준 사회통념상 거주지역의 타 지역에 비해 소득소비수준, 생활수준, 복지수준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서적 지지	낮은 애착관계	부모와 감정적 유대가 낮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음, 정서적 친밀하지 않는 관계
	낮은 정서적 지지	자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격려, 신뢰, 공감하며 자녀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줌
	인성(가정)교육 결여	부모의 인성이 온화하지 못하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무례함이 드러남
기능적 요인	학업에의 관심 저조	평소 학교나 학업에 관심이 낮아 자녀의 과제나 성적에 무관심
	부모의 관여	부모 참여 의지 희박 학교생활에 부모가 참여하는 빈도가 낮고, 학교폭력 발생 시 사과를 통한 원만한 화해 또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음
		무관심, 방임, 감독 소홀 자녀의 행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관심 갖지 않음 비행에 대해 체벌하지 않고, 학교폭력 가해지 반성을 유도하지 않고 방관함
과잉보호	지나친 학교 개입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생활이나 교사에게 빈번하게 간섭을 함
	과도한 보상 요구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지나친 금전적 보상, 정신적 피해 복구에 대해 과도하게 요구함, 가해자에게 형사사법 절차를 통한 위력행사를 가함
	부모의 문제(대리)해결	가해자의 부모가 대신 사과, 화해요청, 중재에 나서고 합의를 하는 등 직접해결
집안 분위기	강한 피해의식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노심초사함, 피해를 받으면 극도로 불리하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함
	부부폭력 목격	부모가 자주 다투거나,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성장하는 경우
	아동(청소년)학대 경험	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짖은 언어폭력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짖은 욕설을 듣는다거나, 다정하지 않은 의사소통에 익숙해져 있는 분위기

## 1. 가정의 구조적 요인

### 가. 가족의 형태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정의 구조적 요인은 가족의 형태와 사회경제적 지위로 범주화 하였다. 면접결과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형태는 기존의 양적연구들이 결손가정의 자녀가 비행과 학교폭력에 보다 쉽게 노출된다는 결과들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이는 최근의 학교폭력은 형사절차의 전(前)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 즉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 수준이 경미한 경우가 많다는 점, 범죄소년이 아닌 또래집단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면접과정을 통해 양부모인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sup>55)</sup> 예를 들어, 수집된 사례에서는 두 경우에 있어서면 결손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례 10]의 경우에서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장난을 빗대어 폭력에 대한 정당화 태도로 일관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사건해결과정에서도 어머니의 적극적인 화해의 조치가 부족하였고, 원만한 합의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55) 수집된 사례들은 주로 사건기록물 또는 현장일지에 의해서 정리되었는데, 가족사항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생계 형태에 대한 항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도표에 적시할 수는 없었다. 다만, 면접과정에서 가족사항에 대한 질문들, 즉 부모의 경제적 수준, 직업, 사건에의 관여 정도, 부모-자녀와의 관계 및 분위기, 정서적지지 정도 등에 대하여 기억환기식 질문들을 통해 응답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결손형태가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사례만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양부모에게서 나타나는 가해요인은 결손 이외의 요인, 즉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가정의 기능적 요인에서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면담자 3]의 주요 진술에서 가정의 구조적 기능은 부모가 가정에 할애하는 시간적 여유가 가능할 때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경제적 여건이 장애요소가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다수의 면담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의견이었으며, Fine(1983), 이창한(2010)의 연구들에서 가족의 결손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감소를 초래함에 따라 자녀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다수의 면접대상자들은 부모의 결손여부 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개입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즉,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관리감독이 소홀해 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손가정에서 외벌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을 고려하면 그 영향이 부정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경찰-면담자 1]).

*경찰-면담자1. “사실, 가해학생들 면담하다 보면 가정 내 불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빠가 술을 드신다거나.. 부부싸움을 자주 본다거나.. 특히, 결손가정의 아이들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부모가 일을 나가야 하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관심을 받는다거나 관리를 받는 건 어렵다고 봐야죠. 불화나 경제적 요인이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맞겠죠.”*

*경찰-면담자3. “꼭 결손가정이라기 보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애들*

관리감독이나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가해학생 이랑 같이 상담을 오면 일 나가야 하는데 상담해라 조사받아라.. 하면 힘들어하고 불만만 얘기하거든요. 결국 가정에서 무관심해지면, 애들은 밖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가출해도 부모가 그냥 친구 집에서 자고 오나보다 하고 (가출)신고 안 하거든요.”

## 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이 일반 소년범죄자들과 달리 일반적인 가정의 청소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양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의 경우에도 속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의 형태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라기 보다는 부모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부모가 가정과 자녀에 할애하는 시간 또는 사회경제적 활동 시관가도 관련이 있다. 즉, 이러한 영향은 이중섭·이용교(2009)와 Brown(2002)의 연구들에서 가족의 소득수준, 지역의 경제적 수준 등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에 비추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맞벌이인 경우 자녀양육 및 관리 감독에 대한 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도 밝히고 있었다.

다만, 학부모의 경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이 전담경찰관보다 다소 낮은 비율로 나타난 이유는 가해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폭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원인을 학교나 또래 친구들에서 찾기 때문이었다. 이는 면담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그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구조적 기능에서 경제적 수준 외에도 교육적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면담자 2]). 부모의 교육수준은 곧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도 하는데, 주로 상담이나 조사를 받는 가해자 중

에서도 사회적으로 상위계층의 직업군에 속해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사례 9, 12]).

이와 같은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등이 학교부적응 및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송신영(2007)과 기광도(2011)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정의 구조적 요인들은 서로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족의 결손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감소로, 이는 또 다시 부모-자녀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었다.

**경찰-면담자2.** “개인적으로는 가정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교육수준도 그렇고 경제적 수준도 그렇고.. 부모가 교육을 잘 받은 경우는 애들도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대로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수준이 높다는 건 또 경제적 수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 빈곤층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경찰-면담자20.** “저희 관할은 사건 자체가 많은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00이나 00지역(면접 조사 지역 중 비교 지역 일부를 언급)이랑은 수준이 다르고... 솔직히 잘사는 동네는 지역적 조건이 좋아서 사건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방법도 잘 돼 있고,, 이 동네는 일단 경제 수준이 낮으니 부모들이 거의 일 나가고, 지역수준(경제)도 낮아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죠.”

**학부모-면담자5** “우리지역은 부모들이 다들 잘살고 직업도 좋아요. 학교폭력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거의 없어요. 학교폭력 예방도 잘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있어도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학부모-면담자10. “애들이 학교 다녀와서 학원가기도 바빠요. 학교폭력도 애들 관심이나 여유가 그쪽에 몰릴 때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입시나 경쟁이니 부모들이 애들 성적에 관심이 많고, 애들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 동네가 부유한 동네라서 사교육열도 높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없죠.”*

## 2. 가정의 기능적 요인

이 연구의 중심주제인 영향 요인 중 기능적 요인은 과거 연구들에서 주로 Hirshi(1969)가 주장하는 애착을 주요 변수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이 요인의 정도는 양적연구들에서 적정한 수준 정도, 즉 긍정적 애착관계가 학교폭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연구과정 중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애착변수를 발견하였고, 이 요인들은 자녀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었다. 이러한 유형들은 다수의 사례들에서 자녀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교사, 학교 그리고 분쟁의 해결 전반에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들 요소들은 부모의 보호요인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요인은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긍정적 보호요인은 적정한 수준에서 작용하는 것이고, 부정적 보호요인은 낮은 정서적지지와 부모의 관여, 과잉보호 그리고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 등이 가해행동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가. 부모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관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부모의 보호요인은 가해의 지속을 억제하는 수단이거나,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례 12]에서 보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부모의 대응으로 괴롭힘이 중단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 자신들보다 지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모가 교사나 경찰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게 되면 가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Bansel et al.(2008)의 연구에서 학교폭력 당사자의 관계를 권력 및 지배력 등에서 볼 때, 보호요인은 이미 이 두 가지 요소에서 우월한 지위를 형성해 준다는 것이다.<sup>56)</sup> 물론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부모들은 직접 반성과 사과를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사례 1, 3, 5]) 자녀가 지속적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걱정된 부모의 보호요인, 즉 애착 등의 정서적 지지와 적절한 감독이 학교폭력의 중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Hirshi(1969), 이하늘·이숙(2012), 김혜원·이해경(2000) 등의 선행연구들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

이와 반대로 부모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자녀에의 관여는 학교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담경찰관과 학부모 모두 부모의 낮은 정서적 지지가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인성 및 가정교육의 부재는 비슷한 수준에서 가해학생의 인성에

56) Bansel, P., Davies, B., Laws, C., and Linnell, S. "Bullies, bullying and power in the contexts of schooling",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30(1), 2009, pp. 59-69.

도 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험적 진술을 하였다.

한편, 부모의 관여에 있어서는 무관심, 방임, 부모의 감독의 소홀은 학교폭력 가해요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부모-면담자1]의 경우에서도 부모의 장애는 결국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관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부모를 대신하는 관리감독자의 부재가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데 실패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정서적 지지와 관여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이 깊은데, 자녀와의 관계에서 낮은 애착관계는 자녀의 자기통제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관심과 방임은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통제력을 약화시킨게 된다. 무엇보다, 조사결과에서는 가정교육 즉, 인성교육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적응이나 비행에 부정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부모들의 태도와 자녀의 문제해결을 돕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모의 특성에서 인성교육의 정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학부모-면담자15]. 이 과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간의 갈등이 학부모 갈등으로 확대되는 등 자녀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가정 내 양육방식 개선 및 부모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  
**학부모-면담자 1** “피해자가 장애인인 적이 있었는데,, 부모도 장애가 있어요. 자치위원회에 갔더니 피해자 부모가 잘 모르니까 그냥 합의해 주고 말더라구요. 가해자들이 아주 나쁜 애들이었어요. 장애아라고 몰래 몰래 괴롭히고, 그러다 걸리면 안 그랬다고 하고....근데도 결국 피해자 부모가.. 애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끝나 버리는 거죠”

.....  
**학부모-면담자 15** “가해자 부모들 보면 그 부모성격 그대로구나 하는 맘이 듭니다. 부모가 말이 안통해요. 피해자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합니다. 무조건 자기 자식 다칠까봐 합의 보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여요”  
 .....

## 나. 부모의 과잉보호

부모의 보호요인은 주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면접조사 결과 윤명숙·송행숙(2011)의 연구처럼 부모의 과잉보호가 학교에의 부적응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기존의 양적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사항들은 부모의 지나친 학교개입 또는 자녀 대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면접결과, 전담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부모 간의 화해 또는 합의로 학교폭력 분쟁이 해결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때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지나치게 교사와 학교 그리고 사건에 대해 간섭하는 것, 피해자의 부모 중 일부는 강학 피해의식을 통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

한다고 진술했다.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는 부모의 문제해결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나, 과도한 보상에 대해서는 전담경찰관의 인식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면담자가 일부 피해자인 경우에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례들에서 접하게 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다수는 가-피해자의 화해 또는 합의로 종결이 된다. 물론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은 경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나 가해 당사자와 그 부모들은 중재 또는 자치위원회를 통해 형사절차 이전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다.

결국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화해보다는 학부모의 개입, 대리해결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는 처리과정에서 행여 자녀들이 더 상처 받을 것을 우려하고 사건을 해결하기에 급박한 부모들의 개입으로 인해, 정작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절차가 생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나 자치위원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해-중재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보다는 가해학생의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그치고 있다. 이는 현행 「학교폭력방지법」 제 1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선도 및 징계와 분쟁조정 등 심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sup>57)</sup>

57)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여기서 문제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사항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가해자의 부모는 이 기록이 향후 진학·진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해자의 부모들이 직접 피해자와 그 부모들에게 용서와 사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화해·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실제 연구에서 접한 사례들 또는 자치위원회에 참관한 경우에는 학생들은 이러한 절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따라서 화해를 통한 사건의 해결 보다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하여 대신 사건을 종결시키는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게 되고, 정작 가해자들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과 이외의 가해행동에 대한 지속적 반성 또는 진심어린 사과에 대한 기회가 축소되는 것이다. 즉, 김춘경(2000)의 연구에서 부모의 과잉보호는 자녀에게 부모의존성을 높이고, 사회공동체에 적응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학교폭력의 당사자 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게 된다.

결국, 가해학생들은 반성문이나 구두사과를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이들이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폭력에 더욱 무감각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신분이 미성년자임과 이를 대신 해결해 주는 부모의 기능을 악용하여, 보다 치밀하고 교묘하게 가해를 지속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다.

-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찰-면담자5.** “애들이 괴롭히는 수준을 보세요.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요가 없어요. 여기 와서도(조사를 받을 때에도) 입으로는 반성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정작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애들이 인성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다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면담자 6** “부모들 보면 비슷합니다. 학교 내에서 대책위(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가보면 부모들이 더 큰 소리치는 경우도 많아요. 내 자식이 뭐 잘 못했냐는 거죠. 근데 또 막상 경찰조사 받고 사태가 심각하다 싶으면, 합의하려고 서둘러 나서기도 해요. 사과도 직접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부모가 해결해 주는 거죠.”

**학부모-면담자 2** “화해는 부모들끼리 하는 거죠. 합의.... 애들 불러다가 누가 잘못했냐 또 무슨일인지 다시 물으며 너무 힘들어 하니깐.. 그러다가 애들끼리(피-가해자) 또 상처주고 감정만 상해요. 부모들이 합의하고 심각해지지 않게 끝내는게 맘이 편한거죠”

**학부모-면담자 4** “가해한 애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는 없죠. 위원회에서 정계내리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니까..... 반성을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

한편, 부모의 과잉보호는 가해요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피해자의 가해자화 또는 가해자의 피해자화 등 당사자의 지위 전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사례 13]의 경우 신고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의 부당한 요구에도 가해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가해자가 또다시 처리과정에서 피해를 겪는 일이 발

생하였다.

사실로 관계를 파악할 때 신체에 상처가 남거나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가 아닌, 괴롭힘, 언어폭력 등과 같은 정서적 폭력 등은 학교폭력의 원인관계 및 피해자와 가해자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 처리절차는 피해자의 신고에 우선하게 되어 있어, 일단 신고·접수된 사안에서 가해자가 억울한 경우라도 사실관계를 스스로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가해자화는 재심의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학교폭력으로 전학 및 퇴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594명 중 42명이 징계가 과하거나 억울하다고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상반기에만 벌써 200여명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42명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58)</sup> 재심 청구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수립 시 신설된 제도로 피-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해학생의 경우 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전학, 퇴학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가해자의 적극적 요구는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부에 기록되어 진학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가해자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 피해자의 신고로 이어지는 가해학생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껴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조정에 앞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진정한 화해에 대해 당사자 모두가 노력하지 않고 피해회복에 우선하여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가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58) 뉴시스, 학교폭력 가해학생 '억울하다' 재심청구 늘어, 2013년 9월 10일자.

또한, 이 경우 피해자는 부모의 과잉대응을 학습하고, 가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친밀관계 유지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화 되어가는 과정이 목격되었다. 면담자들의 다수는 이러한 부모의 과잉대응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도덕성 또는 인성에 따라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에 우선하여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고, 앞서 선행연구들이 정의한 과잉보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의 부정적 보호요인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밝히고 있듯이<sup>59)</sup> 자녀의 정의적·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잉보호로 인한 인성발달의 부정적 학습이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sup>60)</sup> 또한 부모가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찰-면담자4, 7]).

이러한 사례에서처럼, 부모의 과잉보호가 가해요인을 유발하는 경우 또는 가해의 지속을 방임하는 경우들에서 보호요인의 부정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Amaranta et al.(2012)의 연구에서 강조하듯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잉보호의 경우 가해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긍정적 자기통제력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

**경찰-면담자4.** “반대로 생각하며,, 물론 소수의 학생들이 그러는 거지만, 부모가 과잉보호하는 경우는 가해자로 여기까지(경찰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학교에 요청을 하거나, 잘못된 경우에도 미리 학교에 선처를 구하기도 하죠.”

.....

59) 한인영 외, 앞의 논문 참조.

60) 윤명숙·송행숙, 앞의 논문 참조.

**경찰-면담자 7** “학교 자체에서 은폐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부모가 나서면 선생님 차원에서 종결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여기까지(경찰서)오는 경우는 부모가 가난하거나 학력수준이 낮거나 해서 부모들이 애들한테 신경 못 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학부모-면담자 12**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는 전교 10등 안에 들어요 반에서는 늘 1-2등이고, 늘 친하게 지냈던 애들끼리 감정상해서 말다툼한거 정도지.. 피해자가 여러명어서 한 동안 같이 안다녀준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학폭위(자치위원회)로 가면 우리애만 학적부(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으니까 그 애(피해자)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니깐요”

**학부모-면담자 13** “피해가자 전에도(초등학교 당시) 왕따 당한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조금만 멀리해도 학교폭력이라고 신고부터 하는 거예요. 애(피해자) 보다는 그 부모가 난리예요. 자기 애 따돌릴까봐. 일단 전에도 그렇게 해결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학교에 무조건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애 따돌리지 말라고 하고, 정신적 치료비도 달라고 하고..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 인지 모르겠어요”

## 다. 가정 내 분위기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성장과정에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학교폭력과 같은 비행, 나아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sup>61)</sup>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에서는 형사사건화 되지 않는 일반청소년들 간의 폭력문제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학부모 대상 면담에서는 집안 분위기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가정폭력 등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가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응답을 유도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면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부모가 접하는 사례에서 가정폭력이나 학대경험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과 학대 경험은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가해자 부모의 태도나 언어적 습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판단되는 인식에 대한 진술들을 통해 가정 내 분위기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학부모의 경우는 부부폭력과 자녀에 대한 학대 보다는 언어폭력이 자녀의 폭력성에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전담경찰관의 면담에서는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학대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경미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 다수는 가정에서의 잦은 언어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 매체를 통하여 자극적인 폭력을 빈번하게 노출된다는 것과 게임, 인터넷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접속을 억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한계가 많다는 점을 폭력학습의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경창-면담자1].

결과적으로 두 집단 모두 언어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학교폭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자료에서도 편부모 보다는 양부모 가정이 다수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신뢰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을 관찰할 때 언어폭력으로 인한 의사소통, 신뢰관계 및 애착도 낮아 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61) 박은하·권세원, 앞의 논문; 강소영, 앞의 논문 참조.

[학부모-면담자 5, 14].

앞서 학교폭력의 실태에서도 남녀학생 모두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의 피해경험이 가장 많았다. 언어폭력은 사소한 비행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사례 14]와 같이 사춘기의 특성상 정서적 폭력이 갖는 위험성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물리적 폭력과 비교해도 그 심각성이 다르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사례 9, 13, 14, 18]에서와 같이 또래집단에서 험담, 욕설, 루머 등에서 시작한 폭력성은 점점 무감각해지기 쉽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모바일 채팅과 같은 수단을 이용한 언어폭력에서 집단적으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그 심각성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경험정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강소영(2012b)의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적 폭력(언어폭력 포함)이 지위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위비행-경비행(학교폭력 포함)-중비행의 경로분석에서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밝힌 것에 근거할 때, 부모의 언어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비행을 촉진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즉,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의 언어, 태도, 대화기술에서 자녀들이 습관적으로 폭력을 학습하게 되고, 나아가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부모나 가정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최소화 하되, 부모-자녀관계에서 긍정적 요인을 유도하기 위한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

**경찰-면담자1.** “(습관화된 폭력의 원인에 대하여)애들이 영화나 드라마, 게임하면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보잖아요. 점점 더 자극적이고.. 욕하는건 아주 기본이고,, 매체나 그런데서 폭력성을 배우는거죠.”

.....

**경찰-면담자2.** “부모들 보면 애들이 어디서 배우나 딱 알 수 있어요. (자치)위원회 가보면, 가해자 부모들이 자기 자식한테 원망하거나 탓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들 태도나 애들 대하는 말투 보면,, 애들이랑 다르게 없죠. 다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학부모-면담자5.** “우리 애는 여학생이잖아요, 여학생들끼리는 뭐 심각하게 때리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춘기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근데 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따돌리거나 안 놀아주고 그런데서 힘들어 하는거죠. 카톡에 불러놓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이렇게 따돌리고 카톡에서 욕하고,,따돌리고 그게 맞는 거 만큼 힘든 거예요.”

**학부모-면담자14.** “그룹채팅인가 하면 애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대요. 피해자 애를 (카톡 그룹채팅에)불러 놓고 여러 명에서 막 욕을 하고, 뒷담화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학교 애들한테까지 소문내고.. 그 거에 (사이버상 언어폭력, 악성루머) 시달리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가해자 애들 부모한테 정신과 치료비랑 앞으로 계속 (정신과나 상담기관에서)상담 받는 비용이랑,, 교통비까지 다 요구 했어요.”

&lt;표 7&gt; 학교폭력 가해사례의 주요 내용

사 례	학 년	성 별	가족관계	사건개요	비고
1	중1	남	양부모	피해자의 키가 학급에서 제일 작고 만만하게 보였으며, 초 5학년 때 괴롭힘을 당하다 전학을 왔다는 사실을 알고 괴롭히기로 함. 교내 운동장, 수돗가 등에서 머리, 허벅지 등 폭행,	가해자 아버지의 사과,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
2	고1	남	양부모 누나	운동선수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레슬링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지하 복도 등에서 지속적으로 폭행. 폭력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힘.	쌍방 합의
3	중3	남	양부모	같은 학교 후배(피해자)에게 장난을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폭행.	부모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사과를 통해 합의
4	중2	남	양부모 동생	학기초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장난삼아 괴롭힘. 파카모자를 머리에 씌우거나 다수 물리력을 행사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폭행.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의결로 전학조치 및 불구속 기소
5	초6	남	양부모 형	학교인근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비 2만원을 갈취. 최초 범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 신고 당시 10만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실패	아버지가 학교에 반성문을 쓰고 피해자에게 사과
6	고1	남	양부모	소위 학교의 ‘짱’으로 알려져 있는 가해자는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 주민등록증을 강매하도록 하거나 이유 없이 폭행을 지속. 양쪽 눈 밑의 피부살을 4~5초간 꼬집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지속.	쌍방 합의
7	중1	여	양부모 동생	교내 급식실 입구에서 유리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 문을 놓쳤고 그 틈에 가해자가 맞아 피해자를 오해하여 뺨을 때리는 등 멍들게 함. 이를 계기로 수차례 폭행.	쌍방 합의

8	중3	남	양부모형	학교 내·외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며 위력행사를 하는 집단.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 ‘짜증난다’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수시로 폭행을 지속. 어깨를 주무르라고 하거나, 휴대폰을 빌려가 하교시간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의 강요 행위를 지속.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앙심을 품고 협박을 하기도 함.	일부는 우발적 폭행이라고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신고에 대해 감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양부모누나		
			양부모동생		
9	초4	여	양부모	수업 시간에 전날 했던 오목놀이에 대해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닥쳐’, ‘뭐라고 한거냐’라고 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일로 교사에게 꾸지람을 듣게 되자, 쉬는 시간에 피해자를 불러 폭행.	피해자의 엄마가 대책위에서 처벌을 요구했으나, 구두 사과 처분결정을 받음.
10	중1	남	어머니형	교내 복도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는 이유없이 때리고, 하교길 버스정류장 등에서도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세 개 치는 등 장난을 빙자한 폭행. 다수의 목격자 진술에 의해 지속적 폭행을 확인.	폭행에 대한 심각성 인지 없음. 장난삼아 했다고 주장. 반성하는 태도 없음.
11	초6	여	양부모	평소 행동이 또래들과 다르고 혼자 중얼거리는 피해자를 다수의 가해자가 집단괴롭힘. 가해자 다수는 피해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어울리지 못한다고 주장.	학교전담경찰관의 상담 및 교육과정을 통해 괴롭힘 중단.
12	고1	남	어머니동생	부정선거를 통해 학생회에 당선된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비롯 집단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사실을 담임교사와 부모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	부모의 요청으로 교사 및 학교장의 개입을 통해 괴롭힘 중단.
13	중3	여	양부모	평소 친하게 지내던 6명이 단체그룹 채팅에서 피해자의 악성루머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5명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 신고. 중재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의 개입과 처벌 및 정신적 치료비 요구로 합의.	부모의 과잉대응으로 가해학생들 선도프로그램 참여. (가해자의 피해자화)
14	중1	남	양부모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학급의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폭력 및 장난을 빙자한 사소한 괴롭힘 등을	가해학생을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

				당해온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같은 반이 되어 피해의 지속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의 신고로 합의.	
15	고3	남	양부모 누나 2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던 이성 친구 사이에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선배 남학생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해자를 협박, 자퇴를 강요하는 등 괴롭힘.	가해자 부모의 적극해명과 피해자부모의 합의로 종결.
16	중3	남	양부모 형	피해자(고1)는 여동생을 장기간 괴롭히고,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는 가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방과 후 집근처에서 만나기로 함. 가해자가 친구 4명을 데리고 나와서 CCTV가 없는 한적한 곳으로 유인, 집단폭행으로 인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순찰경찰관이 발견하고 응급처치. 가해자는 쌍방폭행으로 주장.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집단폭행으로, 여동생에 대해서는 괴롭힘(스토킹 포함) 등 학교폭력으로 각각 고소 상태
			양부모 남동생		
			양부모 누나		
			아버지 형		
			양부모 남동생		
17	중3	남	양부모	가-피해자는 평소 장난을 치던 와중에 장난의 수준이 점점 격해짐에 따라 화를 내며 피해학생의 얼굴을 가격함. 피해자 얼굴의 상처회복을 위해 수술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조건으로 수술비, 정신적 피해 보상비, 기타 교통비 등 약 2000만원을 요구함.	학교 측의 의뢰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분쟁조정을 통해 화해 및 합의
18	중2	여	어머니 언니	같은 학급의 피해자에게 그룹채팅을 통해 지속적인 헐담과 욕설로 집단 괴롭힘을 1년간 지속. 어울려 지내는 또래 집단 여럿을 주동하여 피해자를 오전 쉬는 시간마다 불러내 휴대폰 모서리로 이마를 찡는 등 심하게 상처 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신체적 폭력도 1년 간 지속함.	가해자의 부모가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가 피해사실에 대해 늦게 알게 되어 피해가 지속됨.

## 제4장 가정적 요인 해소를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

생애경로 범죄학(Life course criminology)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을 조기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면, 최초 반사회적 성향이 촉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될 것이다.<sup>62)</sup> 즉, 가정적 요인에서 발견되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의 결손에 따른 대안과 고위험군 청소년에 관리감독의 강화,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의 개선<sup>63)</sup> 등에 대한 현재 학교폭력 양상에 맞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연구과정을 통해 가정의 구조적·기능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 및 경찰활동에 있어 이러한 가정요인에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정의 형태와 결손의 이유,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양한 가정의 요인들을 일률적인 대안으로 지원과 보호한다는 것은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가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모 또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 검토를 제안하고자 한다.

62) Wasserman, G. A., & Keenan, K., Tremblay, R. E., Coie, J. D., Herrenkohl, T. I., Loeber, R., and Petechuk, 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Child Delinquency, Child Delinquency Bulletin Serie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2003, p. 2.

63) O'Brien, Martin & Yar, Majid, (2008). Crimin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pp. 56-57.

## 제1절. 고위험군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

### 1. 저학년 대상 관리감독의 강화

학교폭력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요소인 가정요인은 사회구조상 경찰의 정책으로 이를 해소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조사결과에 따라 결손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에 대해 부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더더욱 한계가 따른다.

특히, 교육부(2013)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장소가 학교 밖(30.7%) 보다는 학교 내(69.3%)로 교내 폭력 발생비율이 높고, 하교 후(17.1%) 보다는 쉬는 시간(42.7%)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sup>64)</sup> 교실 내의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재범우려가 높은 중학교 1학년에 대하여 학교생활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점과 감안할 때, 학교 내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점증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교사는 초등학교 4개교에 불과해 중학교 997개교, 고등학교 580개교에 비해 매우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sup>65)</sup>

상담교사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가-피해자들의 요청에 의하거나, 사건 해결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는

64) 교육부, 앞의 자료, 4면.

65) 교육부, 위의 자료, 5면.

경우다 다수였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현장수요에 비해 낮은 배치율과 교사와 학생 간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더욱이 조사결과를 통해 부모의 관리감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이러한 관리감독의 강화는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교실 내 상주 교사가 없다는 점은 폭력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는 행정업무가 과도한 교사들에게 수업시간 외 학생 관리에 대한 집중의 부담은 더욱 과중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실기제도 및 경연대회, 실적인센티브제 등과 같은 가시적인 교육정책들을 최소화 하고,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을 바탕으로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에게는 교과수업 및 수업 외 시간에 학생 관리감독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저학년 교과과정 연계 및 맞춤형 교육의 전환

앞서 실태와 심층면접을 통해 보듯이 학교폭력 예방의 기본적 과정은 언어폭력에 대한 범죄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저학년시기부터 올바른 언어습관 형성 교육 및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기술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국어과목을 비롯하여 언어습관, 언어순화를 강화하고, 도덕, 윤리, 법과 사회 관련 교과목과 연계하여 인성교육 뿐 아니라 범죄예방,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을 위한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사소한 폭력에 대해 적극 신고를 장려하고 경찰의 즉시 개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학습효과는 강의식의 정보전달 형태보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체험형태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언어폭력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 역할극, 심리극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반성 및 자기통제력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교폭력에 있어 경찰의 개입은 예방교육과 같은 사전관리 외에는 사건이 신고 접수 되거나 자치위원회가 소집될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담경찰관의 학교 개입 재량은 극히 제한적인데, 학교장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또는 요구가 없을 시에는 장기간 또는 정기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주로 범죄예방교실과 같은 일방향적 정보 전달식의 성격이며, 전교생-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식 형태가 가장 많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언어폭력의 피해경험 비율이 가장 높지만 남학생의 경우 물리적 폭력, 여학생의 경우는 사이버폭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그에 맞는 단계적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은 인터넷 중독 대응 및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와 같은 부분은 교육청, 방송통신위원회, 학교 등 관련부처와 연계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는 담당 학교 개입에 대한 재량과 의무를 확대하여, 학교와 주변 환경, 가해학생의 특성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시의 적절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미국경찰의 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D.A.R.E.) 프로그램은 정복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10주간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마약 등에 대처하는 방법, 학생들이 자기통제력을 길러 스트레스와 주위의 압박을 어떻게 잘 해소하는지,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하여 전반적으로 학생들 스스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담당학교의 환경과 수요에 따라 장기적으로 학교에 방문하면서 언어폭력에 대한 범죄학 인식 고취, 사이버 또는 물리적 폭력의 대상자들에 적합한 맞춤형-체험형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 제2절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학부모 참여

### 1. ‘직장 내 학교폭력예방교육’ 도입 검토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가정교육, 자녀관계 등과 같은 자녀양육방식과 자녀의 학교개입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매우 필요해 보였다. 현재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수의 학부모는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보다 일반학생의 학부모들이 다수이며, 그나마도 맞벌이 부부의 경

우는 예방교육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교육방식이 단기간,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점과 신청방법이나 정보가 부족한 부모 또는 교육을 원해도 생업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례들에서 발견된 부모의 보호요인 강화를 위해 부모대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하는 것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직장 내 성교육 및 윤리교육 등과 같은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의무적 직장교육 프로그램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최근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개정 2013.08.13.)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범죄예방은 제외되어 있는데, 추후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교육을 의무화 하는 시책들 중에 직장 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이수에 대한 정책지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찾아보면,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의 취지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추가 조항을 마련하거나 기관에 지침을 개정하여 직장 내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생업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

지 못하는 학부모에 대하여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부모의 심리상담, 자녀관계의 개선 등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경찰에서는 법교육,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대처방안 등에 대한 형사사법적 접근을 병행하여 부모 개인의 인성함양과 동시에 실무적인 대처방안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온라인 교육이나 연수기간 중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직장 내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에서 교육의 참여 여건을 개선, 자녀 양육기법 및 상담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창출,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대책의 교육적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가해학생 특별교육에 학부모 참여 의무화

부모의 과잉보호 요인은 가해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축소하고, 범죄화 인식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회복이 어려운 상습적 가해학생의 경우 부모의 과잉개입으로 인해 개선이 어려운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례들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인성 및 가정교육의 미흡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부모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처리절차에서도 부모들 간의 사건 해결 및 화해로 인해 정작 가해들에게 반성이나 용서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 화해는 어려워 보였다.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 대상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의무적 시행은 연 1회 예방교육

에 한정되어 있다. 그 외의 프로그램들을 학교, 유관기관 또는 경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정작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반성과 화해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인성교육 뿐 아니라 자녀 교육 전반에 대한 의무적 참여가 필요하다.

미국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교육청 및 학교의 학부모 참여 관련 책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sup>66)</sup> 여기서 는 소년범죄자나 비행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의무교육 등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가 교육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해 적극적·긍정적으로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개입은 자녀의 학교적응에 예방적 관여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2년부터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해 특별교육 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sup>67)</sup>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부터는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명시했으나 과태료 징수 주체가 모호해 벌칙규정이 유명무실하고, 심지어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특별교육을 유인물 배포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sup>68)</sup>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하여서는 의무이행을 법률로써 강제할 필요가 있다.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에서 선도프로그램 이수 결정을 처분을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을 「학교폭력방지법」에서 명시하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의 거부 또

66) <http://www.ed.gov/>

67) 뉴시스,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12% 특별교육 거부, 2012년 10월 12일자.

68) 연합뉴스, 學暴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2013년 5월 5일자.

는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가해학생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 시 이를 반영하여 감면에 고려하거나,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에 대해 졸업 후 삭제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개선 여부와 학부모의 선도프로그램 의무이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진학 전 삭제 방안도 조심스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자녀의 선도프로그램은 연계기관의 상담, 관계회복 등의 요소 등을 제외하고, 현재 경찰에서 이수하는 선도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학부모가 함께 이수하는 형사사법참여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JIP(Juvenile Intervention Program)과 같은 형사사법단계의 체험프로그램은 13세~17세 사이 학교폭력, 마약, 조직폭력 등에 진입하는 초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계 형사사법단계 체험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자녀상담, 대화기술 향상을 통한 가족결집력 발달과정과 같은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다.<sup>69)</sup>

현재 교육부 및 지자체에서 개발·적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데, JIP프로그램의 경우들을 가해학생 및 부모에 대한 의무적 이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가해자 선도프로그램의 경우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학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교육의 빈도와 프로그램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69) [www.co.san-bernardino.ca.us/sheriff/](http://www.co.san-bernardino.ca.us/sheriff/)

## 제3절 경찰의 사후관리 및 처리절차의 공정성 강화

### 1. 경찰의 사후관리 연계 강화

지금까지 고위험군 학생 또는 가해자 대상의 선도프로그램 등은 지역 사회 유관기관 또는 교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적용해왔다. 현재 경찰은 사랑의 교실 및 Wee센터, Cys-net 등에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관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시행 초기 단계이고 그마저도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피해학생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재범관리가 미흡하다는 진술들을 면담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고위험군, 특히 결손가정의 가해학생 재범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의 사후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최소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지속적 관리 재량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경우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경찰관이 1:1 형식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성과에 반영되거나 특정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관 개인이 개별 학생에 대하여 멘토 역할을 해 주는 방식에 불과하다.

면담과정에서도 전담경찰관들 청소년 상담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어 고위험군 가해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나, 관련 사건에 대해 정보수집 차원에서 접촉하는 경우에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수하고 있는 청

소년예방재단의 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경우는 단기간 내에 사이버강좌를 통해 형식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상담기법이나 방법에 대한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전담경찰관의 경우 업무 배분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고위험군 재범자들에 대한 1:1멘토링을 전담경찰관의 업무성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업무상 성과 달성을 이해 과열경쟁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고위험군 재범학생의 선별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공식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다양한 경찰활동에도 업무과중이나 예산부족을 토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할 만큼 집중하고 있는 홍보·이벤트성 프로그램 또는 비전문적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방향을 적정 수준으로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전문가인 경찰관에게 새로운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유도함으로써 경찰의 역할범위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 2. 피-가해자 불분명한 사안에 대한 공정성 강화

사례들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신고를 교사에게 먼저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학교는 자체적으로 분쟁조정 및 자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학교전담경찰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부담으로 자치위원회 전 분쟁조정을 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학교폭력의 신고를 비롯하여 교내 자치위원회 및 경찰조사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현행 「학교폭력방지법」 및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무고한 가해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발생하는 가해자의 피해자화에 대한 회복이나 사후관리는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한계로 밝혀졌다. 앞서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접수된 가해학생들을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야하는 부당한 사례들도 빈번하다.

현행 교육부 지침은 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 내용도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가해학생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학교폭력의 특성상 피-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억울한 가해자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신고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자치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화해보다는 가해학생 징계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의 과도한 요구에 부당하게 응하거나, 피해자에게도 유책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책임관계 또는 분쟁에 대한 민사관계에 대하여 교사나 경찰에게 업무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가 소집되기 전 사안 처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확대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학교폭력의 당사자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학부모의 비율을 조정하고, 법률 자문 또는 청소년 전문가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담경찰관은 민사관계를 제외한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는 학교의 은폐·축소, 부적절한 합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제5장 결론

이 연구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대 사회악’ 근절 방안 중 학교폭력의 최근 양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수많은 원인 분석들은 소년비행과 관련하여 가정, 학교, 친구 그리고 매체와 같은 사회적 요인들에 대하여 양적 연구방법들을 통해 검증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 양상이 과거와 달리 교묘하고 비표출적 형태로 지속되거나, 괴롭힘, 강요행위, 성적 수치심 등 날로 진화하는 특성들을 감안할 때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관계들을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요인들은 주로 가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원인관계가 분명하더라도 가정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어렵다는 것이 한계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범죄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정에 부모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간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는 등 사회전반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다양한 원인 중 근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적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하여, 중장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정적 요인은 기존 연구들에서 도출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양적 변수들에 대한 검증이 아닌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최근 달라지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하여 2012년 경찰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연령, 성별 차이를 통해 변화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상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서울, 경인지역의 학교전담경찰관 20명과 학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해서는 117센터와 (사)피해자지원협에서 제공 받은 학교폭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룹면담을 실시하고, 각 조사대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을 진술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저연령화 현상과 언어폭력의 심각성이 중심주제로 도출되었다. 우선, 저연령화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급증한다는 점과 특히, 발생 빈도는 중학교 1학년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은 기존의 실태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저연령화의 원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는 매체의 영향도 들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정에서의 감독소홀을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혔다. 특히, 중학교 1학년에 집중되는 높은 발생빈도는 새로운 또래 및 서열의 형성과 사춘기로 접어드는 과도기 시점에서 초등학교와 달리 학교 내 관리감독자가 없고, 일과 중 다수의 시간을 가정 외에서 보내고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원인으로 밝혀냈다.

둘째, 학교폭력 유형에 따르면 남녀학생 모두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남학생은 물리적 폭력, 여학생은 사이버폭력과의 연관성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는 폭력에 대한 반응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것을 감안할 때, 남학생의 경우 물리적 폭력을 수용하는 정도가 여학생보다는 관대하고, 여학생의 경우는 시선에 의한 정서적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의 수단으로 범위가 확대됨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수의 학교폭력이 사소한 다툼, 욕설, 헐담, 모욕

등 언어폭력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언어폭력에 대한 범죄화인식이 미흡한 것과 조기 억제의 실패 등이 학교폭력의 지속과 심각성을 증대하는 것도 추정할 수 있었다. 특히, 폭력에 대한 수용정도는 Agnew(1982)의 일반긴장이론에서는 통제기제의 약화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통제약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심층면접을 통해 심도 있게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심층면접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크게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선 가정의 구조적 요인은 가족 형태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범주로 구분되었고, 기능적 요인은 부모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관여, 과잉보호, 가정분위기에서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족형태와 관련해서 가해학생의 사례들은 결손가정 보다는 양부모 가정이 더 많았는데, 기존의 연구들이 결손형태에서 비행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과거 연구들은 폭력성이나 비행,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영향관계를 다룬 반면, 이 연구에서는 이미 접수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차이점이 있고,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보다는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례들이 많다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양부모 가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양부모인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의 감독 소홀, 부모-자녀의 양육형태의 부정적 기능 등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 기능적 요인 등 다른 요인들이 상호작용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위에서 언급한 맞벌이 부부, 낮은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깊었다. 즉,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생업의 수단이 맞벌이인 경우가 많았는데, 부부가 가정 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관여와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은 구조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요인에서

도출되는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셋째, 기능적 요인 중 낮은 정서적 지지와 관여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같이 심층면접의 대상자들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정·인성교육의 부재를 가장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았고, 다음으로는 방임·감독소홀, 낮은 애착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통제요인이 되기도 한다.

넷째, 기능적 요인 중 과잉보호는 보호요인의 부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 사례들에서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 대신 사과, 합의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가해학생은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축소되고, 폭력에 대한 죄의식 또는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 재가해 가능성의 우려도 도출되었다.

한편, 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피해자 부모의 과도한 개입, 요구에도 가해학생이 이에 응하거나 부적절한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다. 특히, 유책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신고에 우선하는 처리절차뿐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없을 시에는 억울한 가해자화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다섯째, 가정의 기능적 요인 중 집안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부모 간 폭력 목격, 학대 경험, 잦은 언어폭력에의 노출 등이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 중 선행연구들과서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비행과 달리 학교폭력과 관련한 경미한 폭력은 학대와 가정폭력 보다도 잦은 언어폭력에 의한 정서적 자극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잦은 언어폭력에의 노출은 곧 부모의 가정·인성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의 피해 경험이 높은 것에 비추어 가해학생이 가정에서 언어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될수록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범죄화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언어폭

력은 결국 물리적 폭력, 사이버 폭력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에서 새로운 학급으로 진학하는 과도기인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부모의 관리감독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학년 학급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도기를 경험하는 중학교 1학년에서 학교폭력 가-피해 빈도가 높고, 이들의 개인적 기제보다는 새로운 학급에 대한 문화충돌, 서열형성 등 권력관계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학기 초 집중관리 및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 폭력이 발생이 높은 시기에 담임교사의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담임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의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관리체계를 저학년 계층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내 폭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폭력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시간, 장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교사와 경찰이 함께 연계하여 이중적 관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저연령시기부터 국어 등 교과과정을 통한 바른 언어습관을 기르고 도덕, 윤리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더불어 법과 사회 교과 등에는 학교폭력의 이해 및 대처방안 등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교과과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의 범죠평양교육은 일회적, 강의식 형태가 많아 그 실효성이 낮은바 언어폭력의 범죠평양 인식 개선, 남학생의 물리적 폭력에 대한 역할극, 여학생의 사이버 폭력 및 정서적 폭력에 대한 심리극 등 맞춤형-체험형 교육으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부모의 관리감독 강화 및 인성교육 등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하

여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관 및 기업에 법률로써 의무화 하여,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고 나아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녀상담,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가해학생은 사안의 해결을 부모가 대신함에 따라 진정한 반성의 기회가 축소되고,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고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가해자 대상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등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반대로 부모가 참여하고 함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학생부 기록의 조기 삭제 등을 조심스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 경찰은 사건이 종결되면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을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해 주고 있는데, 이들의 재범률은 낮아지고 있지 않다. 관련 기관의 인력부족,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재범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식적으로나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식적 사후관리로 규정하여 경찰단계에서 고위험군 가해학생에 대한 밀착형 관리감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적 프로그램은 성과에도 반영하여 경찰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결손가정이거나 양부모인 경우에도 맞벌이 가정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가해학생의 경우 부모 대신 애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찰의 사후관리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 등 학습효과가 낮은 형식적 교육은 지양하고,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가해학생은 전문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피해자의 뚜렷한 구분이 모호한 점과 신고에 의한 처리절차가 피해자에 우선하고 있어,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만약 유책한 피해자의 경우 부모의 과도한 개입을 통해 가해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 가해자는 학생부 기록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부당한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소집되기 전 단계에서도 법률전문가 또는 청소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원으로 위촉된 경찰관이 사건에 개입하여 민사관계를 제외한 피해-가해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양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원인을 가정적 요인에서 도출하는 경우, 정책이 근본적으로 가정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가정과 교육에서의 바른 언어습관을 위한 교육 개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직장 내 교육 이수, 경찰의 체험형 교육으로의 개선과 절차상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의 담당에 맞는 교육적 대안과 경찰의 역할을 재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강소영, “학교폭력에 대한 근거이론의 접근: 폭력적 교실문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 제2호, 2012a.
- \_\_\_\_\_,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방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 제1호, 2012b.
- 교육부,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3.
- 기광도, “사회계층과 범죄피해간의 관계분석: 저연령아동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0: 357-374면.
- 김준경,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교정시설 보호청소년의 위험행위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3호, 2008.
- 김춘경,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인심리학적 분석”,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치료연구 4권 1호, 2000.
- 김준호 외,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9, 145면.
- 김혜원, 청소년 학교폭력: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 학지사, 2013.
- \_\_\_\_\_, 이해경,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제1호, 2000.
- 노성호, “청소년의 비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검증” 제2회 한국청

- 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5
- 박은하·권세원, “가정폭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3호: 2008.
- 송신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심희옥,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에 관한 횡단 및 단기종단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세미나자료집, 2008.
- 윤명숙·송행숙, “부모 및 심리사회적특성과 집단괴롭힘 경험이 중학생 외톨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0호, 2011.
- 이윤희, 범죄학, 박영사, 2007.
- 이주리, “중고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과 비행”,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7권 제4호, 2008..
- 이중섭·이용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7호, 2009..
- 이창한, “결손가정의 기능적 특성과 적응유연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2권 1호, 2010.
- 이하늘·이숙,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경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50권 2호, 2012.
- 이희길, “자녀양육을 매개로 한 범죄성의 세대 간 전이”, 사회이론, 제33호, 2007면.
- 전영실, “여성 폭력범죄의 특성 및 대책”, 교정연구, 제22호, 2004
- 정규석.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

회복지학, 제56권, 제 1호, 2004.

한인영·홍준성·문현주, “조부모·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폭력가해경험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1호, 2013.

홍성렬, 사회과학도를 위한 연구방법론, 시그마프레스, 2005.

## 2. 국외 문헌

Amaranta et al., “Longitudinal impact of parental and adolescent personality on paren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2, No. 1, 2013, pp. 189-199.

Anne Daly et al., “Indicators of risk of social exclusion for children in Australian households: an analysis by state and age group”, *Australasi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Vol.14 No.2, 2008, pp. 133-157.

Bansel, P., Davies, B., Laws, C., and Linnell, S. “Bullies, bullying and power in the contexts of schooling”,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30(1), 2009, pp. 59-69.

Beaty, L. A. & Alexeyev, E. B., “The Problem of school bullies: What the research tells us”, *Adolescence*, 43(169), 2008, pp. 1-11.

Bolger, K. E. & Petterson, C. J.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72(2), 2001.

Brown, "The impact of social exclusion on rural children and young people", A paper to the rural affairs forum for England, 2002.

Cliff McKinney et al., "Perceived parenting,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 of parents and late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vol. 13 No. 2, 2008.

Denzin, N, K., *The logic of naturalistic inquiry*, Sociological methods: A sourcebook. New York: Mcgraw-Hill, 1978.

Farrington, David P., "The Twelfth Jack Tizard Memorial Lecture: The Development of Offending and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Key Finding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360, 1995..

Fine, M. A., J. R. Moreland, and A. I. Schwlebel, "Long-term effects of divorce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1983, pp. 703-713.

Garnezy, N.,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1991, p. 417.

Haight, W. L., Kagle, J. D., & Black, J. E.,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Foster Care Visits: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Social Work*, 48(2), 2003, pp. 195-207.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흥식

외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학지사, 2006.

Lasa Broidy and Robert Agnew, "Gender and Crime: A general Strai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1997, pp. 275-306.

Nicholas Walliman, *Your Research Project: Designing and Planning Your Work*, 손장권 역, 리서치 프로젝트, 도서출판 그린, 2013.

O'Brien, Martin & Yar, Majid, (2008). *Crimin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Olweus, D. *The Revised Olweus Bully/Victim Questionnaire*, Bergen, , Norway: Mimeo, Research Center for Health Promotion (HEMIL), University of Bergen, 1996.

Wasserman, G. A., & Keenan, K., Tremblay, R. E., Coie, J. D., Herrenkohl, T. I., Loeber, R., and Petechuk, 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Child Delinquency, *Child Delinquency Bulletin Serie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2003.

### 3. 기타

경찰청, 내부자료, 2013.

경향신문, "폭력교실 도피전학 잇따라", 1986년 5월 23일자.

\_\_\_\_\_, "학교 폭력, 경산 투신 학생 성추행도 당했다", 2013년 3월 14일자.

뉴시스, “영주 '중학생 자살사건' 학교폭력 실체 드러나”, 2012. 04. 18.

\_\_\_\_\_, “학교폭력 근절대책 100일 ...신고 늘고 형사 처벌 줄어..”,  
2013년 6월 7일자.

\_\_\_\_\_,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12% 특별교육 거부”, 2012년 10월  
12일자.

동아일보, “전주 자살 고교생 유족 “1년 동안 학교폭력 당해...담임 알고  
도 쉬쉬”, 2012. 01. 13.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학생 3년간 두배로...초등생 '급증’”, 2013년 8  
월 25일자.

\_\_\_\_\_, “학교폭력 가해학생 3년간 두배로...초등생 '급증’”, 2013년 8  
월 25일자.

한겨레, “2년째..나 맞고 산다...대구서 학생 10번째 투신”, 2012. 06.  
04.

\_\_\_\_\_, “자살한 날도 동급생 일진이 샌드백 치듯 때려..광주 중학생도  
학교폭력 희생”, 2011. 12. 30.

[www.co.san-bernardino.ca.su/sheriff/](http://www.co.san-bernardino.ca.su/sheriff/)

<http://ko.wikipedia.org>.

책임연구보고서 2013-11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

201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